

투자 위험 등급 : 2등급[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9년 7월 1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8월 7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br>(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br>[모집(매출) 총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 개시(2016년 12월 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합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 [집합투자증권신고서]<br>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   |
|                                     | [투자설명서]<br>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br>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a href="http://www.kiwoomam.com">www.kiwoomam.com</a><br>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br>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경쟁매매를 통해 ETF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좌당 거래가격이 1좌당 NAV에 비해 높

거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1좌당 NAV와 일치하지 않는 ETF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보

(작성기준일: 2019.07.01)

## 키움KOSEF배당바이백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BJ915]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b>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b>주식</b> 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b>높은 변동성</b> 에 따른 <b>가격 하락 위험</b>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투자신탁으로 <b>상장 거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KOSEF배당바이백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b>투자목적 및 투자전략</b>	추적대상지수를 지수산출기관인 와이즈에프엔(WISEfn)사가 발표하는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이하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추적대상지수에 편입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b>분류</b>	투자신탁,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증권(주식형), 상장지수투자신탁									
<b>투자비용</b>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40	0.05	0.924	46	94	144	253	575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b>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b>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b>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18.07.02~ 2019.07.01	최근 2년 2017.07.02~ 2019.07.01	최근 3년 2016.07.02~ 2019.07.01	최근 5년 2014.07.02~ 2019.07.01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2016.12.15	-3.43	-0.73			3.80			
	비교지수		-4.57	-59.48			-48.84			
	수익률 변동성		13.68	13.81			13.07			
	주1) 비교지수 :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운용전문인력</b>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김중협	1978	팀장	50개	11,044억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7년 5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해외파생상품 등의 매매시 시장충격 및 관련비용 지출, 상/하한가, 거래정지,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등으로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 위험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거래량 등의 기준 미달) 상장폐지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상장거래 위험 (가격괴리 위험등)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투자신탁의 환매가 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b>환매방법</b>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iwoomam.com">www.kiwoomam.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iwoomam.com">www.kiwoomam.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kiwoomam.com">www.kiwoomam.com</a>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 총액</b> 별도로 정해진 총좌수 없음
효력발생일	2019년 8월 7일	<b>존속기간</b>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kiwoomam.com">www.kiwoomam.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조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기구의 종류</b>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8
3. 모집예정금액.....	8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8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1
4. 집합투자업자.....	11
5. 운용전문인력.....	1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3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3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6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9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8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9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2
1. 재무정보.....	32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3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4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7
2. 운용관련업무 위탁업자에 관한 사항.....	3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9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0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0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1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3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4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6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46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6
[붙임] 용어풀이.....	47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BJ91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의 종류** 증권(주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표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합니다)(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6년 12월 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합니다.

2)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방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한 청약과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에 대한 요청은 법인투자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도 그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투자자는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기타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 상장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나. 상장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거래방법: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상장요건**

가. **규모요건**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나.유동성 요건

- ①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 ②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③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 ①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 ② ①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라.자산의 구성요건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증권외의 자산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 ③ 상장지수펀드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마.존속기한 :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바.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①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 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 ②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사.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합니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제3항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주1)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급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장폐지 요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기구의 상장을 폐지합니다.

가.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 라.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마.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합니다.
  - ④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의 경우
  - ⑤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사.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아.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차.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BJ915)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12.15	최초 설정
2017.02.1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8.02.28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1.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8.07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2019.07.01. 현재)

####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종협	1978	팀장	50개	11,044억	-6.18	-4.08	-6.29	-4.22	*운용경력: 7년 5개월 (2007.10. ~ 2011.12.)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 주식운용실 (2012.01. ~ 2013.11.) 유진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 (2013.11.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전략 운용/ ETF운용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우	설정일 ~ 20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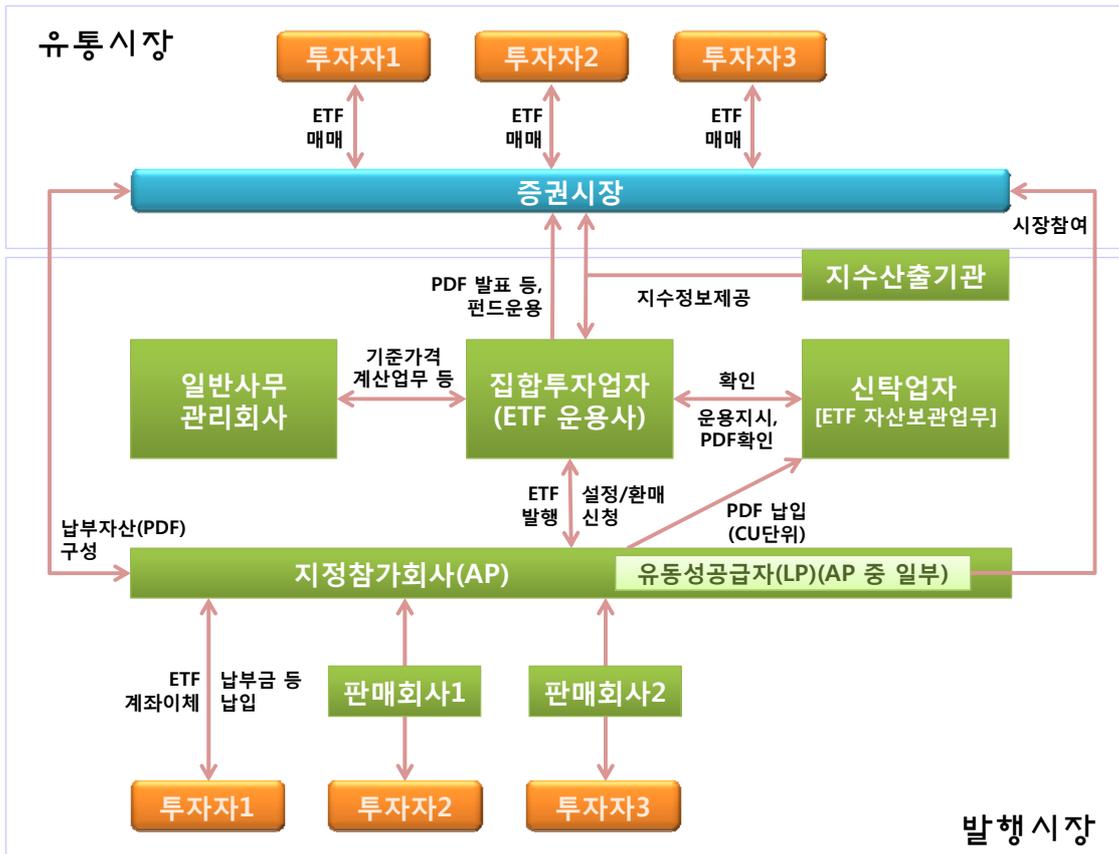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

▷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투자 과정

-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이를 상장시킨 후 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 발행시장이란, 펀드로서의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합니다.
-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ETF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때 지정참가회사 중에서 ETF의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겸하는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ETF 가격에서 일정 범위 호가 내에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ETF를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동성공급자는 ETF 기초지수에 대한 선물 및 현물주식 바스켓 거래를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동ETF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유동비율 반영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을 유니버스를 구성하여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적정 호가제공을 추구합니다.
- 동ETF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변경·해지 현황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kind.krx.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를 지수산출기관인 와이즈에프엔(WISEfn)사가 발표하는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이하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추적대상지수에 편입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이하 “국내주식”이라 합니다)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 총액의 20%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남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추적대상지수의 100 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 18 조제 1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 18 조제 1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 18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계약 제 19 조제 2 호,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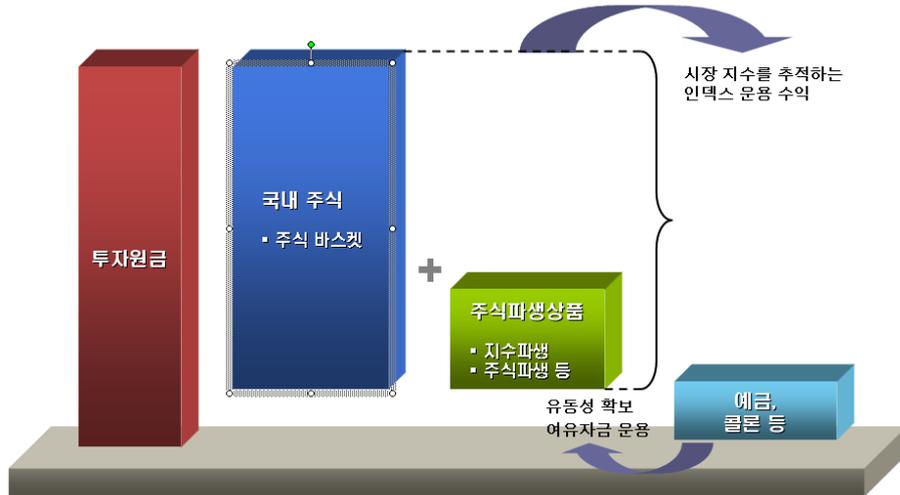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와 유사한 수익과 위험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 등락에 따른 손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차익거래, 보유주식의 대여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인덱스 추종을 위하여 편입종목의 기업분할, 합병 등과 같은 인덱스 구성비중의 변경 발생시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한 매매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③ 기초지수 :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

- 산출기관: 와이즈에프앤(WISEfn)
- 유니버스 구성: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유동비율 반영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서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이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 최근 3개년도 DPS와 EPS 증가 혹은 유지
  - 리밸런싱 직전 6개월 내 자사주 매입 실시
  - 리밸런싱 직전 6개월 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매매
- 종목구성
  - 유니버스 종목 중 배당수익률 상위 10종목
  - 상장주식수 대비 자사주 매입 비율 상위 10종목
  - 상장주식수 대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순매수 비율 상위 10종목
- 가중방식: 동일비중 방식
- 리밸런싱주기: 연2회(1월, 7월의 최초 영업일)
- 기준시점: 2013년 1월 2일(기준지수: 1,000pt)

주1) 지수에 관한 정보는 자료 작성일 현재까지 인덱스 산출기관 또는 지수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기초지수는 회사의 판단 또는 시장의 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허용 추적오차의 범위 &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 및 기준 등]

① 당사는 인덱스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적오차 관리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 ② 매 3 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리밸런싱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 개월 동안 배당 차감 후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지수 대비 1%p 이상 하회할 경우 수시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단, 선물 베이스스 등 포트폴리오 이외의 영향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덱스의 정기변경 및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 ③ 적법한 내부지침 변경 절차에 따라 인덱스 운용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적오차와 리밸런싱에 관한 기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① 추종하는 인덱스와의 추적오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적오차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매분기 또는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및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30개 종목에 대하여 동일비중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의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도 금전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금전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50,000 작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위험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의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거래량 등의 기준 미달) 상장폐지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b>	<b>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의 경우 경쟁매매를 통해 ETF 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 좌당 거래가격이 1 좌당 NAV 에 비해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1 좌당 NAV 와 일치하지 않는 ETF 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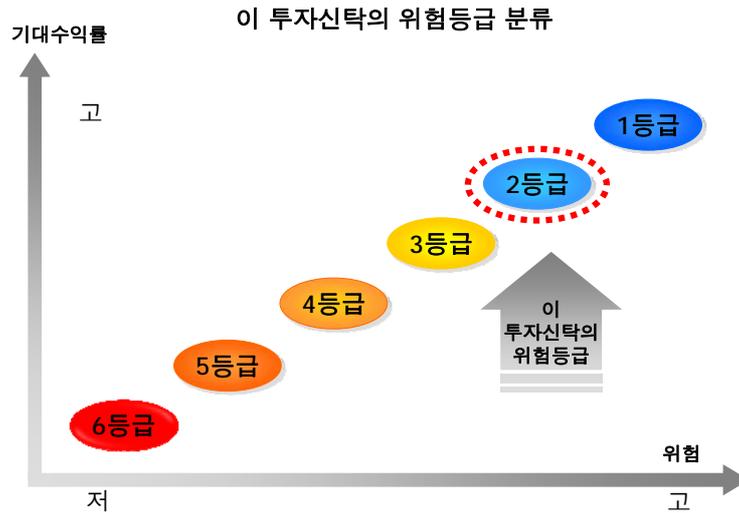
###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위험 (기준가격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상장거래위험 (가격괴리위험등)</b>	<b>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b>

	<p>양이 적거나, 투자신탁의 환매가 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p>
임의해지 위험	<p>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거래중지 위험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p>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세금 관련 위험	<p>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p>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b>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b>할 수 있습니다.</p> <p>*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최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 예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① 증권 시장에서의 수익증권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지정참가회사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부금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1주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설정단위(Creation Unit, 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b>&lt;설정단위의 변경 예&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을 최초 설정할 당시의 추적대상지수가 900pt일 경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해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4.5억(900pt × 10 (승수) × 설정단위 50,000좌)이 될 것입니다.</li> <li>▷ 그러나 추적대상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800pt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이 9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수를 25,000좌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li> </ul>

**③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b>&lt;정산금액 최소화 방안&gt;</b>
<p>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금전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부자산 작성시 반영</li> <li>▷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부자산 작성시 반영 등</li> </ul> <p>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p>

**④ 기타 수익증권 매입 관련 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나.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부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b>&lt;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gt;</b>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b>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b>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정 판매회사에 납부금등(증권 및 금전을 말합니다)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포트폴리오 납부자산 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의 납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체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②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포트폴리오납부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부 받아 정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금전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금전산출: 설정청구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한국거래소에서의 시세가격을 말합니다)에 의한 평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대납금전의 정산: 대납금전의 비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합니다.

- ④ 투자자가 ②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 판매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부자산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합니다.

<b>&lt;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gt;</b>
④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함

- ⑤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부자산 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⑤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동 자산을 모두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b>&lt;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gt;</b>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포트폴리오납부자산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의 평가가액보다 적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 ⑦ ①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① 내지 ⑦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의 내역과 기존에 설정청구를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b>&lt;외국법인 투자자의 설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gt;</b>
--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취소에 따른 자산 전부를 금전으로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교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다.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투자신탁 설정 절차

#####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납부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설정청구일(T)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주식, 금전 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납부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설정청구일 익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상장신청을 합니다.

##### 설정일(T+2)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일 거래소 영업개시 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구 분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 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입 확인

#### 2) 환매

**가. 환매방법**

환매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신탁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매입**

- 금전이 아닌 실물자산과 금전의 결합으로 환매(해지)를 합니다.
- 환매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환매에 따른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나. 투자신탁 환매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lt;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gt;</b>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b>오후 3시 30분까지</b> 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b>오후 3시 30분까지</b>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지정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익자가 ① 내지 ④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의 환매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b>&lt;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gt;</b>
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b>&lt;외국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환매자산 지급 방법&gt;</b>
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인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외국인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한국거래소시장의 종료로부터 일정시한 전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
- ▷ 수익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⑦ ① 내지 ④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⑤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⑧ ⑦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부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투자신탁 환매 절차**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납부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환매청구일(T)**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 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환매청구일 익영업일(T+1)**

-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환매일(T+2)**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거래소를 통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구분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수익자 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을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라.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①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② 아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li> <li>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1차당 기준가격은 최초설정일의 추적대상지수에 지수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li> <li>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해당 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에 동 기준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방문하시어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li> <li>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게시·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li> </ul>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2)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총 보수 · 비용(피 투자 집합투자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투자신탁	0.30	0.05	0.02	0.03	0.40	0.924	0.0463	0.4463	-	0.1232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 발생시	매3개월/사유 발생시	매3개월/사유 발생시	매3개월/사유 발생시	-	-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주1) 최초 보수계산기간의 3개월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의 보수계산 기간은 그 날의 익일부터 매3개월을 의미합니다. 보수 관련 상세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1.01 ~ 2018.12.31]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1.01 ~ 2018.12.31]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46	94	144	253	575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 ·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1)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 가. 이익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② 집합투자업자는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나.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기초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기준일 :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합니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7월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수익자가 이익을 분배 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후 결산 및 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 및 분배 직후를 의미) 과세 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단, 배당소득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환매시 배당소득금액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매도 및 해지(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환매시 배당소득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실제 매매차익

= 매도 시점의 매도금액 - 매수취득금액

-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하여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③ 기타 사항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ETF를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ETF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합니다.(단, 같은 날 매도되는 ETF는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

\* 이동평균법: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3기 (2018.01.01 ~ 2018.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2기 (2017.01.01 ~ 2017.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기 (2016.12.15 ~ 2016.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3기 (2018.12.31)	제2기 (2017.12.31)	제1기 (2016.12.31)
운용자산	11,545,173,823	12,873,907,836	10,839,636,304
증권	11,304,173,600	12,535,553,950	10,752,268,51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41,000,223	338,353,886	87,367,79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044,279,716	6,766,802,427	7,145,322,295
자산총계	17,589,453,539	19,640,710,263	17,984,958,59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869,489,700	6,748,594,564	7,027,370,974
부채총계	5,869,489,700	6,748,594,564	7,027,370,974
원본	11,126,088,000	11,126,088,000	11,126,088,000
수익조정금	-29,793,670	0	-1,040
이익잉여금	623,669,509	1,766,027,699	-168,499,335
자본총계	11,719,963,839	12,892,115,699	10,957,587,625

[단위 :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3기 (2018.01.01 ~ 2018.12.31)	제2기 (2017.01.01 ~ 2017.12.31)	제1기 (2016.12.15 ~ 2016.12.31)
운용수익	-1,089,408,981	1,991,212,989	-165,835,228
이자수익	2,846,230	2,502,047	27,508
배당수익	43,947,651	127,697,128	188,124,860
매매/평가차익(손)	-1,136,202,862	1,861,013,814	-353,987,596
기타수익	2,502,217	1,690,745	36,297
운용비용	49,574,074	49,176,478	2,124,140
관련회사 보수	47,705,828	47,470,773	2,055,210
매매수수료	1,868,246	1,705,705	68,930
기타비용	5,877,354	9,199,182	576,264
당기순이익	-1,142,358,192	1,934,528,074	-168,499,335
매매회전율	103.75	118.54	64.45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3)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14.79%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3기(2018.12.31)		제2기(2017.12.31)		제1기(2016.12.31)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241,000,223		338,353,886		87,367,794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1,000,223		338,353,886		87,331,874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35,920	
<b>대출채권</b>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b>유가증권</b>		11,304,173,600		12,535,553,950		10,752,268,510
1. 지분증권	11,304,173,600		12,535,553,950		10,752,268,51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0		0		0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b>기 타 자 산</b>		6,044,279,716		6,766,802,427		7,145,322,29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772,401,690		6,489,966,835		6,957,133,63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280,172		309,186		27,508	
4. 미수배당금	271,478,650		276,411,063		188,124,860	
5. 기타미수입금	119,204		115,343		36,297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b>자 산 총 계</b>		17,589,453,539		19,640,710,263		17,984,958,599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b>기 타 부 채</b>		5,869,489,700		6,748,594,564		7,027,370,97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857,077,340		6,734,232,880		7,025,012,74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12,011,605		13,961,379		2,340,846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400,755		400,305		17,388	
<b>부 채 총 계</b>		5,869,489,700		6,748,594,564		7,027,370,974
<b>자 본</b>						
1. 원 본	11,126,088,000		11,126,088,000		11,126,088,00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29,793,670		0		-1,040	
3. 이익잉여금	623,669,509		1,766,027,699		-168,499,335	
(발행좌수 당기: 263,523,005 좌 전기: 185,533,051 좌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800,000.00 원 전기: 800,000.00 원 전전기: 800,000.00 원)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623,669,509	1,766,027,699	1,766,027,699	-168,499,335	
<b>자 본 총 계</b>		11,719,963,839		12,892,115,699		10,957,587,625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17,589,453,539		19,640,710,263		17,984,958,599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기(2018.01.01 ~ 2018.12.31)		제2기(2017.01.01 ~ 2017.12.31)		제1기(2016.12.15 ~ 2016.12.31)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49,296,098		131,889,920		188,188,665
1. 이 자 수 익	2,846,230		2,502,047		27,508	
2. 배당금수익	43,947,651		127,697,128		188,124,860	
3. 수수료수익	1,578,362		1,369,328		36,297	
4. 기타투자수익	923,855		321,417		0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1,603,846,445		2,993,683,944		44,987,334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익	1,112,038,445		2,471,797,944		41,787,33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91,808,000		521,886,000		3,200,00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2,740,049,307		1,132,670,130		398,974,930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손	2,153,360,307		745,063,630		397,424,93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586,689,000		387,606,500		1,550,00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b>운 용 비 용</b>		55,451,428		58,375,660		2,700,404
1. 운용수수료	35,779,855		35,603,498		1,541,419	
2. 판매수수료	5,963,008		5,933,689		256,904	
3. 수탁수수료	2,385,156		2,373,394		102,753	
4. 사무수탁수수료	3,577,809		3,560,192		154,134	
5. 지급수수료	7,385,963		7,204,570		294,506	
6. 기타비용	359,637		3,700,317		350,688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142,358,192		1,934,528,074		-168,499,335
<b>좌달순이익(또는 좌달순손실)</b>		-4,334,946,742		10,426,864,99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8.01.01 ~ 2018.12.31	0	129	0	22	0	23	0	117
2017.01.01 ~ 2017.12.31	0	110	0	0	0	0	0	129
2016.12.15 ~ 2016.12.31	0	0	0	111	0	0	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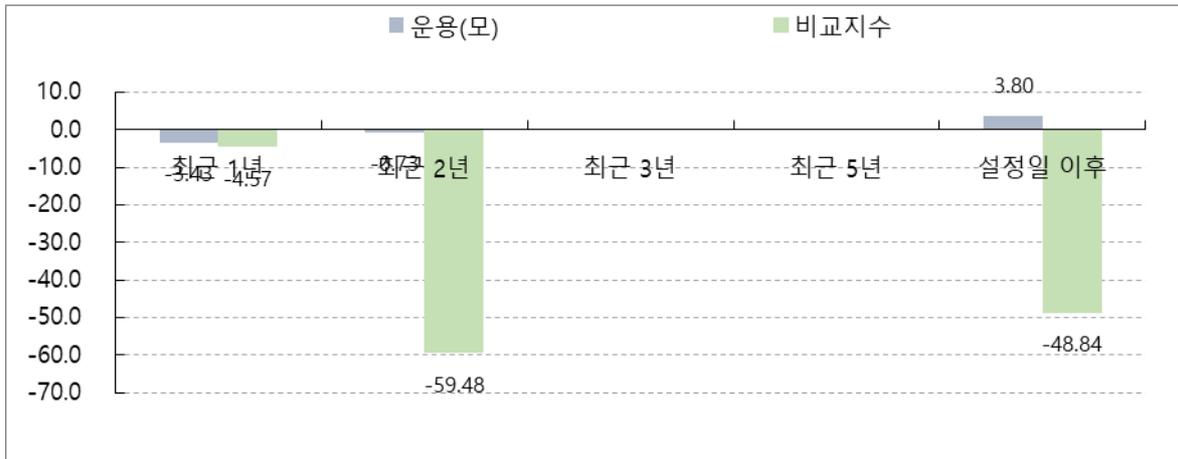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8.07.02~ 2019.07.01	2017.07.02~ 2019.07.01	2016.07.02~ 2019.07.01	2014.07.02~ 2019.07.01	
운용(모)	2016.12.15	-3.43	-0.73			3.80
비교지수		-4.57	-59.48			-48.84
수익률 변동성		13.68	13.81			13.07

- 주1) 비교지수: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 × 10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6)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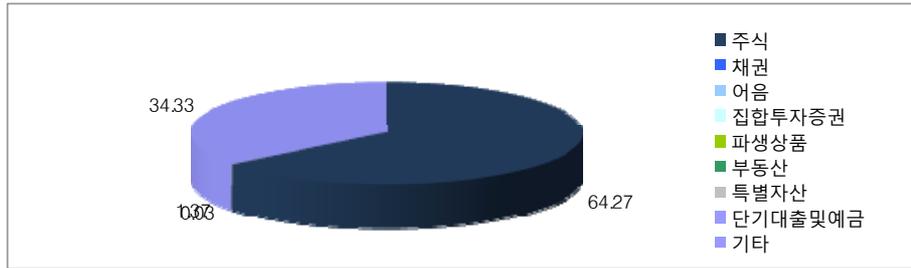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8.07.02~ 2019.07.01	2017.07.02~ 2018.07.01	2016.07.02~ 2017.07.01	2015.07.02~ 2016.07.01	2014.07.02~ 2015.07.01
운용(모)	2016.12.15	-3.43	2.05	11.57		
비교지수		-4.57	-82.79	10.61		

- 주1) 비교지수: WISE 배당바이백플러스 지수 × 10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6) 키움KOSEF배당바이백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최근 3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18.12.31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113.0 (64.27)	0.0 (0.00)	0.0 (0.00)	0.0 (0.00)	0.1 (0.03)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4 (1.37)	60.4 (34.33)	175.9 (100.00)
KRW	113.0 (64.27)	0.0 (0.00)	0.0 (0.00)	0.0 (0.00)	0.1 (0.03)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4 (1.37)	60.4 (34.33)	175.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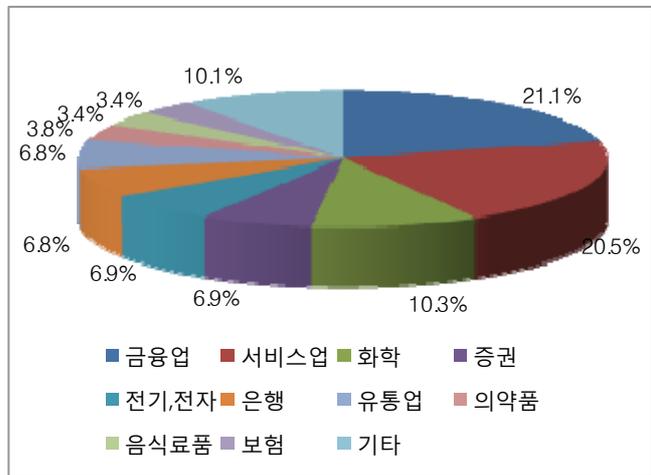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 2018.12.31 현재 / 단위 : 억원, % ]

업종명	금액	비중
금융업	23.9	21.1%
서비스업	23.2	20.5%
화학	11.6	10.3%
증권	7.8	6.9%
전기,전자	7.8	6.9%
은행	7.7	6.8%
유통업	7.7	6.8%
의약품	4.3	3.8%
음식료품	3.9	3.4%
보험	3.9	3.4%
기타	11.4	10.1%
합계	11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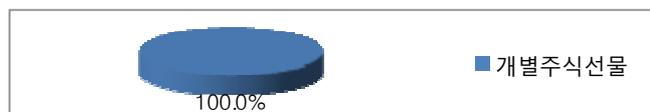


주)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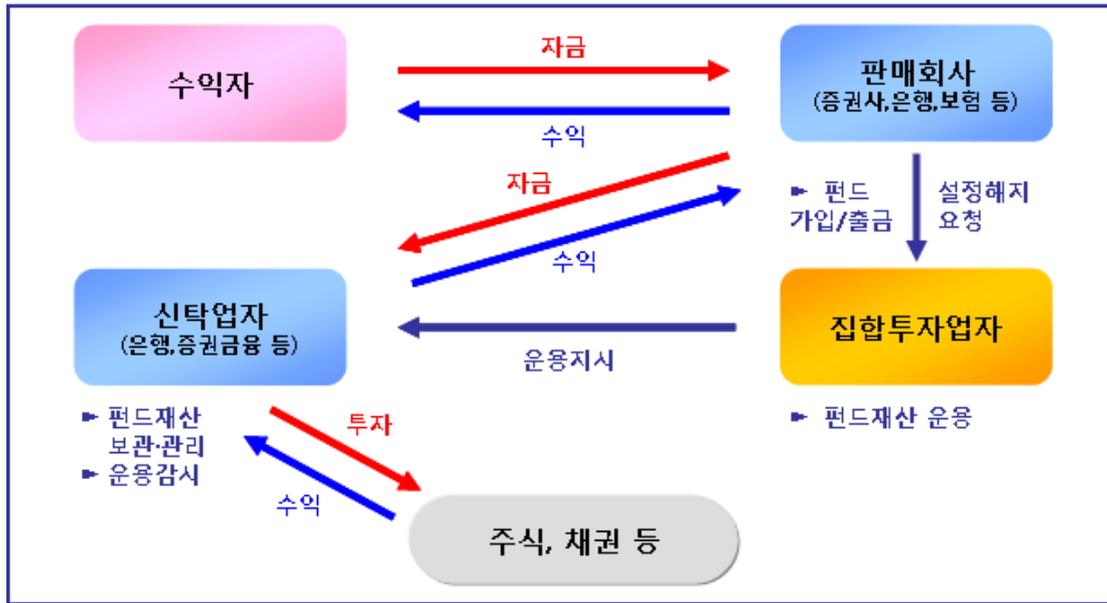
[ 2018.12.31 현재 / 단위 : 억원, % ]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개별주식선물	3.5	100.0%
합계	3.5	100.0%



-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 2) 주요 업무

##### 가.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1(당)기 2018.12.31현재	제30(전기) 2017.12.31현재	구분	제31(당)기 2018.01.01 ~ 2018.12.31	제30(전기) 2017.01.01 ~ 2017.12.31
현금및예치금	41	33	영업수익	527	505
증권	1,253	1,096	영업비용	339	297
대출채권	21	106	영업이익	187	208
유형자산	18	10	영업외수익	5	2
기타자산	127	115	영업외비용	1	0
<b>자산총계</b>	<b>1,460</b>	<b>1,359</b>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91	210
예수부채	3	2	법인세비용	37	57
기타부채	94	102	<b>당기순이익</b>	<b>154</b>	<b>153</b>
파생상품	4	7	기타포괄손익	2	16
<b>부채총계</b>	<b>100</b>	<b>111</b>	<b>총포괄손익</b>	<b>156</b>	<b>170</b>
자본금	410	410			
자본잉여금	173	173			
이익잉여금	780	65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13			
<b>자본총계</b>	<b>1,360</b>	<b>1,248</b>			
<b>부채및자본총계</b>	<b>1,460</b>	<b>1,359</b>			

**4) 운용자산규모**

[ 2019.07.01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7,773	69,463	3,994	23,345	19,681	28,958	34,957	1,565	81,772	281,507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연락처: (02) 2073-7114)
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예탁결제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연락처: (02) 3774-3000)
홈페이지	www.ksd.or.kr

2) 주요 업무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수익자총회 등

#####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이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이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이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이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5) 재판관할

-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http://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1) 정기보고서

####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에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관련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 경과시점에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산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주식	4,485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 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파생형	법령상 운용규제에 따른 분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